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, 신청인이 직무수행과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, 그 과정에서 의학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정보가 없는 신청인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음.

이에,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, 신청인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자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노출되는 유해·위험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질병명,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한 기간 등 공무원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(안 제3조의3제2항 신설)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영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추정하는 영 별표 1 제2호의 2-8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명 및 유해·위험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한 기간 등의 판단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관련 질병) 제3조의3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등록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유해·위험요인 관련 질병의 공무원관련성 판단기준(제3조의3제2항 관련)

1.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

질병명	판단 기준
지주막하출혈, 뇌내출혈, 기타 비외상성 두 개 내 출혈, 뇌경색증, 급성심근경색증	해당 질병의 발병 전 12주 동안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 하면서 진단된 경우 가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의 2-1부터 2-8까지의 직무수행 관련, 상 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교대제 근무를 수행함 나. 1주 평균 실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함. 이 때 실근 무시간은 출근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, 휴가시간(연 가, 병가, 공가 및 특별휴가)은 제외하며,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%를 가산(휴게시간은 제외)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.

2. 직업성 암

질병명	판단 기준
폐암	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. 화재진압·구조가 주 직무로서, 10년 이상 업무수행 후 발 생한 폐암 나. 함정, 군용차량, 항공기, 특수차량 등의 수리·보수·정비 업무 담당으로 10년 이상 업무수행 후 발생한 폐암
악성종피종	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. 화재진압·구조가 주 직무로서, 업무수행 기간이 5년 이상 이고, 첫 유해·위험환경 노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 생한 악성종피종 다만, 노출기간이 5년 미만이라도 석면관련 흉막판이나 석면 폐증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 나. 함정, 군용차량, 특수차량 등의 수리·보수·정비 업무 담 당으로 업무수행 기간이 5년 이상(차량 정비 업무는 2009년 이전 5년 이상)이고, 첫 유해·위험환경 노출 후 10년 이상

	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종괴종. 다만, 노출기간이 5년 미만이라도 석면관련 흉막판이나 석면폐증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백혈병	화재진압·구조가 주 직무로서, 5년 이상 업무수행 후 발생한 백혈병
비호전림프종	화재진압·구조가 주 직무로서, 5년 이상 업무수행 후 발생한 비호전림프종
다발성골수종	화재진압·구조가 주 직무로서, 5년 이상 업무수행 후 발생한 다발성골수종
방광암	화재진압·구조가 주 직무로서, 10년 이상 업무수행 후 발생한 방광암

3. 정신질환

질병명	판단 기준
외상후 스트레스 장애	군인이나 경찰·소방공무원으로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외상 사건(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본인이나 동료의 참혹한 화상이나 상해 발생, 동료의 사망/사체의 목격 등)을 경험하였고, 해당 외상 사건 경험 후 6개월 이내에 그 사실로 인하여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발병하였음을 진단받았으며, 이 진단이 정신건강임상심리사, 임상심리전문가 또는 1급 이상의 임상심리사가 수행한 종합심리검사(psychological full battery)에 부합하는 경우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의3(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관련 질병) (생 략)	제3조의3(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관련 질병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영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추정하는 영 별표 1 제2호 의 2-8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명 및 유해·위험 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한 기 간 등의 판단기준은 별표 1과 같다.